

# 프로젝트 클레임

- FIDIC 다단계 분쟁해결절차 -

시간과 비용의 낭비? vs. 효율적인 분쟁해결방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승현 외국변호사

DK BAE, KIM&LEE LLC



- 1. 클레임의 정의
- 2. 계약관리자
- 3. 클레임과 분쟁의 관계
- 4. 시공자의 클레임
- 5. 클레임의 통지와 Time-Bar

## II 분 쟁

- 1. 분쟁재정위원회(DAB)
- 2. 우호적인 화해
- 3. 중재

## III 결 론



## I. 클레임

- 1. 시공자의 클레임 제20.1조
- 2. 발주자의 클레임 제2.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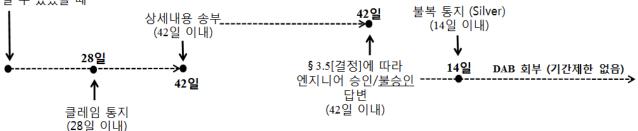
## Ⅱ. 분쟁

- 1. 분쟁재정위원회 제20.2조 내지 제20.4조
- 2. 우호적인 화해 제20.5조
- 3. 중재 제20.6조 내지 제20.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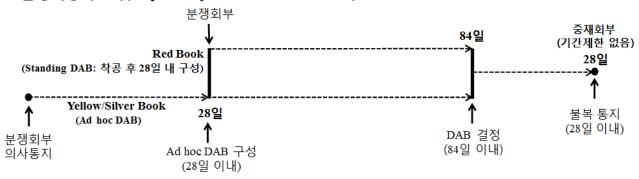


#### 1. 클레임(Cla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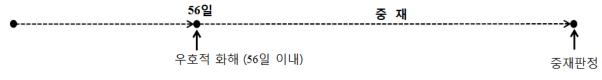
시공자가 해당 사건 또는 상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 2. 분쟁재정위원회(Dispute Adjudication Board: DAB)



#### 3. 우호적 화해(Amicable Settlement) 및 중재(Arbitration)





## 클레임의 정의 엔지니어 클레임과 분쟁의 관계 시공자의 클레임 클레임의 통지와 Time-Bar

## ■ 클레임의 정의

- ▶ 시공자 클레임(제20.1조): 시공자가 공사계약 하에서 공기연장이나 공사비 증액 청구
- ▶ 발주자 클레임(제2.5조):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의 연장이나 금액 (하자보수비용, 계약금액 감액 또는 지연 손해금) 청구

## ▮ 클레임은 엔지니어에게 먼저 제기

- > Red/Yellow Book은 Engineer, Silver Book은 Employer: Any difference?
- ▶ 클레임 청구에 대한 엔지니어의 1차적 의사결정(제3.5조): Fair Determination



## 클레임의 정의 **엔지니어** 클레임과 분쟁의 관계 시공자의 클레임 클레임의 통지와 Time-Bar

## ▮ 엔지니어 – 역할의 이중성

① 발주자의 대리인(제3.1조 (a))

"whenever carrying out duties or exercising authority, specified in or implied by the Contract, the Engineer shall be deemed to act for the Employer."

② 발주자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자(제3.5조)

"Whenever these Conditions provide that the Engineer shall proceed in accordance with this Sub-Clause 3.5 or determine any matter, the Engineer shall consult with each Party in an endeavor to reach agreement. If agreement is not achieved, the Engineer shall make a fair determi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taking due regard of all relevant circumstances."



**엔지니어** 클레임과 분쟁의 관계 시공자의 클레임 클레임의 통지와 Time-Bar

- 1987년 FIDIC Red Book 하에서 Engineer는 Pre-arbitral decision Maker 역할까지 수행
  - ▶ 발주자의 대리인이고 발주자로부터 지급을 받는 Engineer가 어떻게 발주자의 이익 에 반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 Engineer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Engineer가 다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비합 리적
- FIDIC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해서 1999년 FIDIC 계약조건에서는 pre-arbitral decision making 기능을 Dispute Adjudication Board에게 맡김. 따라서 현재 FIDIC Engineer의 이중적 역할의 문제는 많이 약화됨.



클레임의 정의 \_\_엔지니어 \_ **클레임과 분쟁의 관계** \_ 시공자의 클레임 \_ 클레임의 통지와 Time-Bar

## ▋ 클레임과 분쟁

▶ 모든 분쟁이 클레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Ex) 시공자가 제16.2조 하에서 계약해지 후 발주자가 이행보증을 반환하지 않거나, 해지시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비 증액 청구가 아니므로 엔지니어를 거칠 필요가 없음.

## 3단계 분쟁해결절차

- Dispute Adjudication Board (DAB): 재정, 판정 또는 조정?
- Amicable Settlement: 우호적인 화해
- Arbitration: 중재



클레임의 정의 엔지니어 클레임과 분쟁의 관계 <mark>시공자의 클레임</mark> 클레임의 통지와 Time-Bar

- ▮ 시공자의 클레임: 제20.1조
- 클레임 상황 또는 사건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28일 내 엔지니어에게 통지 (Time-Bar 조항)
  - ▶ 발주자의 클레임(제2.5조) 하에서 발주자는 클레임 상황 또는 사건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racticable)
- 클레임 상황 또는 사건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42일 내에 클레임에 대한 상세내역 제출
- 클레임 상세내역을 받은 날로부터 엔지니어는 42일 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의 답변
  - 엔지니어는 공기연장 또는 추가공사비 지급에 대한 결정을 위해 제3.5조에 따른 절차진행



클레임의 정의 엔지니어 클레임과 분쟁의 관계 시공자의 클레임 클레임의 통지와 Time-Bar

- 클레임 통지를 28일 내에 못했다고 해서 클레임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것은 시공자 입장에서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으나, 발주자에게 클레임의 원인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기록을 수집하게 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사전 경고를 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인 면도 있음.
- 영국법상 Time-Bar 조항이 효력이 있으려면 기간 도과하면 권리를 상실한다는 문구가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함.
  - ▶ FIDIC 계약조건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음.
  - 준거법이 영국법인 경우, 발주자 계약위반의 경우에는 Time-Bar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1977년 불공정계약조건법의 합리적 기준 심사 통과해야 유효함.
  - 사우디, 이집트 등 아랍계 국가의 법은 Time-Bar는 시효기간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봐서 무효로 봄.



클레임의 정의 엔지니어 클레임과 분쟁의 관계 시공자의 클레임 **클레임의 통지와 Time-Bar** 

## **■** Time-Bar vs Prevention Principle

- 시공자의 공기지연이 발주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초래된 것이었으나, 시공자가 계약에서 정한 통지기간 내에 공기연장 청구를 못하여 공기연장 청구권을 상실한 경우, 시공자가 공기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예정(Liquidated Damages) 책임까지 져야 하는가?
- ➤ Time-Bar를 우선시킨 판례
- Turner Corporation v. Austotle; Peninsula Balmain v. Abigroup Contractors(호주)
- Multiplex Constructions v. Honeywell Control Systems; Steria v. Sigma Wireless(영국)
- City Inns v. Shepherd Construction(스코틀랜드)
- ➤ Prevention Principle을 우선시킨 판례
- Gaymark Investment v. Walter Construction Group(호주)



클레임의 정의 엔지니어 클레임과 분쟁의 관계 시공자의 클레임 클레임의 통지와 Time-Bar

## **■** Time-Bar vs Prevention Principle

- ➤ Doug Jones 교수의 견해
- Gaymark 판결을 제외한 모든 판결들이 Time-Bar를 우선시키고 있으나, 모두 방론(obita dictum)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Time-Bar를 우선시키기 위해서는 Contra Proferentem 원칙 상, "시공자는 발주자의 방해행위에 의해 지연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정해진 날까지 공사를 완공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어야 함.

•

방해원칙을 적용한 결과 완공 기한은 확정하지 않은(at large) 것이 되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무효가 되고, 발주자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발주자가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하여야 함. 방해원칙이 위반된 의무의 이행가능성에 직접 타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행위를 한 당사자가 구하는 구제수단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방해원칙이 구제수단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완공 기한은 그대로이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 완공 기한을 기준으로 발주자에 의해 초래된 지연을 빼고, 시공자에 의해 초래된 지연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게 됨.



클레임의 정의 엔지니어 클레임과 분쟁의 관계 시공자의 클레임 <mark>클레임의 통지와 Time-Bar</mark>

## ▮ 다른 표준계약조건들에서의 클레임 통지기간 규정

- ➤ Red Book 4판(1987) 시공자가 클레임 통지기간을 도과한 경우, 클레임을 사정하는 엔지니어 또는 중재인이 클레임 발생 당시의 기록에 의해, 입증되는 범위 내에서 클레임 금액을 인정함.
- ▶ IChemE 계약조건: 시공자는 클레임을 발생시키는 사건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통지하여야 함. 클레임 선결조건이 아님.
- ➤ NEC3 제61.3조는 시공자가 클레임을 발생시키는 사건을 알게 된 때로부터 8주 내에 보상사건(compensation event)을 통지하지 않으면 권리 상실. 다만,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가 그러한 사건을 시공자에게 통지했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
- ➤ FIDIC Gold Book은 제20.1조는 원칙적으로 시공자는 28일 내에 클레임을 통지하여야 하지만, 시공자가 기간을 도과하여 클레임을 제출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DAB에 그에 대한 상세를 제출, DAB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기간도과 클레임 제출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고려한다면 28일 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FIDIC 계약조건의 클레임 통지기간의 엄격한 태도를 완화.



II 분 쟁



- ▶ 엔지니어의 이중적 역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1995년 Orange Book에서 도입
- 프로젝트에 대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계약당사자들의 신임을 받는 자가 계약초기에 임명되어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공사진척도와 프로젝트의 잠재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해결하여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
- ▶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분쟁검토위원회(Dispute Review Board)와 다름
- ▮ 계약 또는 양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혼합분쟁위원회(Combined Dispute Board)도 있음 (ICC 계약조건)
- 계약 하에서 공기연장, 추가 공사비, 완공여부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양당사자의 합의 하에 전문가에 회부 가능. 그러나 전문가 결정은 구속력 없음 (ENAA 계약조건)



## DAB 임명 < 상설 DAB ☞ Red Book 임시 DAB ☞ Yellow/Silver Book

- ➤ 플랜트와 EPC 플랜트와 EPC Turnkey 계약의 설계의 대부분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Yellow/Silver Book에서는 임시 DAB의 사용을 기본으로 함. 비용 절감할 수 있음.
- 또한 한 명으로 구성된 DAB에서 그 위원이 그 기술적 분쟁에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임시 DAB가 낫다.
- ▷ 임시 DAB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DAB 구성이 어렵고, DAB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음. Yellow와 Silver Book에서도 설계 끝난 시점에 상설 DAB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 DAB 임명실패시 입찰서부록 또는 계약특수조건에 거명된 임명권자에게 선임요청



#### DAB 결정

- ▶ DAB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을 내려야 함
- ▶ 분쟁에 회부된 날로부터 84일 내
- > DAB 결정은 우호적인 화해 또는 중재에 의해 변경되기 전까지 양 당사자를 구속함
- DAB 결정에 대한 불복은 결정을 받거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날로부터 28일 내



#### ▮ DAB 결정의 구속력의 의미

- DAB 결정은 우호적인 화해 또는 중재판정에 의해 변경되기 전까지 양당사자를 구속함("The decision shall be binding on both Parties, who shall promptly give effect to it unless and until it shall be revised in an amicable settlement or an arbitral award")
- ➤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지 않은 DAB 결정이 중재에 회부됨

  (제20.6조, "any dispute in respect of which the DAB's decision (if any) has not become final and binding shall be finally settled by international arbitration")
- DAB 결정이 내려진 후, 28일내 일방 당사자가 불만의 통지를 한 경우, DAB 결정은 구속력은 있지만 최종적이지 않음(not final but binding).
- Final and binding DAB 결정은 제20.7조에 의한 중재 신청가능. 따라서 제20.4조 및 제20.5조를 거치지 않아도 됨. Not final but binding DAB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제20.6조에 의한 중재신청을 해야 함.



#### ▮ DAB 결정의 이행을 명한 중재판정의 취소 – Persero 판결

#### ▶ Persero 사건 사실관계

PGN과 CRW 인도네시아 회사가 계약을 체결, CRW는 인도네이아에서 설계, 구매, 설치 및 시운전을 하기로 함. 계약은 1999년 FIDIC Red Book을 바탕, 준거법은 인도네시아 법. 중재는 싱가포르에서 ICC 중재. 계약이행 과정에서 CRW는 13건의 Variation Order Proposals을 PGN에게 제출, 양 당사자는 공사변경 가액에 합의 실패, 결국 1인으로 구성된 DAB에 분쟁 회부. DAB는 Variation으로 CRW에게 USD 17,298,834.57를 인정. PGN은 DAB 결정에 대해 불복의 통지를 함.

CRW는 DAB 결정의 이행을 위해 ICC 중재신청. 중재판정부는 DAB 결정의 이행을 명하는 Final Award를 내림. 참고로, PGN은 Counterclaim을 하지 않음.



#### ▋ 싱가포르 1심 법원 판결

#### ▶ 2개의 분쟁

• 원래 DAB 결정의 당부에 대해 다투는 분쟁(제1의 분쟁)과 Not final but binding DAB 결정의 불이행에 대한 분쟁(제2의 분쟁)은 별개이므로 제2의 분쟁은 DAB (제20.4조)와 우호적인 화해 (제20.5조)를 거쳐서 중재 신청해야 함.

#### ▶ 최종판정으로 내린 것은 문제

- 중재인은 그 분쟁과 관련된 엔지니어의 모든 확인서, 결정, 지시, 의견 또는 가액평가 및 분쟁재정위원회의 어떠한 결정이라도 다시 심사, 검토 및 수정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갖는다(제20.6조 2<sup>nd</sup> 단락)
- 중재절차에서, 어느 당사자도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을 얻기 위해 분쟁재정위원회에 제출된 된 증거나 주장 또는 불만족 통지에서 주어진 불만족 이유에 국한되지 않는다(제20.6조 3rd 단락)
- 그러나, PGN이 counterclaim을 제기하지 않았음.



#### ▋ 싱가포르 2심 법원 판결

- ▶ 1심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 근거 중 첫째 근거는 받아들이지 않음.
- ➢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위탁요지서(Terms of Reference)에서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재심사하고 검토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고, DAB 결정 금액의 즉시 지급 이외에도 중재판정의 목적상 필요한 추가적인 사실이나 법률적인 문제를 다룰 권한이 있었는데도 분쟁재정위원회 결정의 본안에 대해서 심리하지 않고 최종판정을 내린 것은 제20.6조의 문언을 명백히 무시한 것이며, 이는 모델중재법 제34조 제2항 (a) (iii)에서 정하고 있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초과한 것이며,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24조 (b)의 자연적 정의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중재판정 취소를 유지.



## ■ CRW의 2nd 중재 신청

- ▶ CRW는 PGN이 DAB 결정을 즉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분쟁(제2의 분쟁)을 DAB에 회부
- ▶ DAB 결정을 즉시 이행하라는 DAB 결정
- > 2nd 중재신청
- ▶ 2nd 중재판정부는 DAB 결정의 이행을 명하는 중간판정(interim award) 내림
- ▶ PGN은 다시 싱가포르 High Court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송 제기(Persero II)



## ▶ Persero II - 싱가포르 1심 법원 판결

- ▶ 중재판정 취소의 소송 기각
- ▶ 2개 분쟁 접근법 v 1개 분쟁 접근법
- ▶ 1개 분쟁 접근법 채택
- > Securities of Payment Regime과 비교

## Persero II - 싱가포르 2심 법원 판결

- ▶ 2개 분쟁 접근법 채택
- ➤ Interim Award는 최종판정이다.



## Security of Payment Acts.

- ▶ 영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 시공자의 Cash Flow Pay now and Argue Later
- ▶ 계약으로 배제할 수 없음.
- 적용범위: 공사수행 또는 재화공급이 이루어지는 국가.
- > Adjudicator 결정 임시적 구속력
- Pay when paid 조항 무효
- > Summary Judgment에 의한 강제집행 예외, jurisdiction 또는 natural justice에 반하는 경우.
- ▶ FIDIC 계약조건의 DAB와 중복 문제



#### ■ FIDIC 계약조건 제20.7조 개정 권고 – 2013. 4. 1

➢ FIDIC은 제20.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권고: FIDIC Guidance to Memorandum to Users of the 1999 Conditions of Contract.

일방 당사자가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이 구속력만 있거나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거나 간에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자신이 가지는 여타 권리에 아무런 영향 없이 약식 또는 기타 간이 구제수단(summary or other expedited remedies)을 위해 제20.6조 하에서 중재에 그러한 불이행을 회부할 수 있다. 제20.4조 [분쟁재정위원회의 결정의 획득] 및 제20.5조 [우호적인 화해]는 본 조의 중재회부에 적용되지 않는다.

➤ FIDIC Gold Book도 동일한 취지



#### DAB 절차는 강행적인 요건인가?

- 제20.8조는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DAB가 임기만료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DAB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20.4조 및 제20.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 스위스 연방대법원 판결 (4A\_124/2014 dated 20 August 2014)
  - 당사자들이 수개월 동안 DAB 구성을 협의하였으나 실패,
     시공자 바로 ICC 중재신청
  - 피신청인은 DAB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없다고 항변.
  - 중재판정부는 제20.4조의 "DAB에 회부할 수 있다(may)"는 표현을 들어 DAB 절차는 선택적 (optional)이라고 판단하는 Partial Award. FIDIC 계약조건에 DAB 구성에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
  - 스위스 대법원은 DAB는 중재의 선결절차로 강행적이라 판시. 그러나 분쟁이 공사완공 후에 시작되었고, DAB가 15개월 동안 구성되지 않았으며, 발주자가 DAB 구성을 지연시킨 사실을 들어 예외적으로 DAB 거치지 않아도 중재판정부 관할권 인정.



#### ▶ DAB 절차는 강행적인 요건인가?

## Peterbrough City 영국 고등법원 판례

원고 Peterbrough City Council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분쟁이 DAB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소송중지(stay)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한 사건. 계약은 FIDIC Silver Book을 바탕으로 체결, 1명의 ad hoc DAB 규정. 최종 분쟁해결은 중재가 아닌 영국법원에서 재판관할합의. 피고가 DAB appointing authority에게 선임을 의뢰해서 DAB 선임된 다음 날 소제기.

본 판결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FIDIC 계약조건의 분쟁재정위원회 절차는 강행적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소송중지 명령 신청을 받아들임.

"FIDIC 계약조건 제20.8조의 "기타 다른 이유로" 분쟁재정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을 때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영국 고등법원은 FIDIC 계약조건 제20.8조는 분쟁이 발생한후에 분쟁재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임시 분쟁재정위원회의 절차 보다는 계약이 상설분쟁재정위원회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판시.



#### DAB 결정의 이행을 명하는 중간판정의 집행 – 뉴욕협약 하에서 집행될 수 있는 중재판정인가?

- 호주 Queensland 대법원은 중재판정부의 "중간 중재명령 및 판정"은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므로,
   뉴욕협약을 이행하는 호주 국제중재법 하에서 집행가능한 중재판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 ▶ 개정 모델중재법 제17조 H: 중간판정뿐만 아니라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조치에 대한 집행력을 인 정함 ☞ 중재판정부의 권한약화를 방지하고, 국제상사중재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필요함.
- 미국 뉴욕주 남부지방법원 판결: Southern Seas Nav Ltd v Petroleos Mexicanos of Mexico
   City 사건
- ▶ 싱가포르, 홍콩도 입법으로 중간판정에 대한 집행력 인정
- 한국은 중재법 개정 작업 중



#### DAB 관련 문제점

- > DAB 결정에 대한 불복의 통지를 한 당사자만이 중재에 회부 가능한가?
- ▶ 중재 회부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DAB 결정이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은 분쟁. 하지만 범위는 이전에 제시된 주장에 국한되지 않음
- ▶ DAB 결정 중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은 분쟁만이 중재에 회부될 수 있음. 따라서 중재 인들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다른 분쟁을 다룬다면 이는 권한유월이 되고 중재판정 취소의 소 또는 승인 및 집행거부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ICC Terms of Reference 작성 후에 새로운 클 레임 사항을 다루기 위해서는 중재판정부의 동의까지 얻어야 함
- ▶ 반대신청(counter-claim)도 DAB를 먼저 거쳐야 함

## II. 분 쟁 – 우호적인 화해



## ■ 우호적인 화해: DAB 재정에 대한 불복의 통지로부터 56일 내

- ▶ 필요한가?
  - 중재 판정 전에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우호적인 화해 가능
  - 중재제기 전까지 최장 168일이 걸림 (실제 더 걸릴 수 있음)
  - 어떠한 Guideline이 없음
- > MAYBE
  - 엔지니어 자신이 내린 결정을 자신이 다시 결정하는 것의 불합리가 사라짐



#### FIDIC 중재조항의 절차상 문제점

- DAB 결정에 대한 불복의 통지를 한 당사자만이 중재에 회부 가능한가?
- 중재 회부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DAB 결정이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은 분쟁. 하지만 범위는 이전에 제시된 주장에 국한되지 않음 (제20.6조 3째 단락)
- DAB 결정 중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은 분쟁만이 중재에 회부될 수 있음. 따라서 중재인들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다른 분쟁을 다룬다면 이는 권한유월이 되고 중재판정 취소의 소 또는 승인 및 집행거부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ICC Terms of Reference 작성 후에 새로운 클레임사항을 다루기 위해서는 중재판정부의 동의까지 얻어야 함
- 반대신청(counter-claim)도 DAB를 먼저 거쳐야 함



## 건설중재의 특징

- 법률적 분쟁보다 사실에 대한 분쟁이 압도적으로 많다.
- 하나의 클레임이나 분쟁이 아니라 다수의 클레임과 분쟁을 다룬다.
- 도면이나 현장기록 등 방대한 규모의 서면이 존재한다.
- 흔히 다수당사자의 분쟁의 성격을 띤다.
- 중재판정부 내에 또는 전문가 증인의 의견 형태로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 된다.



## 중재합의

#### ✓ FIDIC 제20.6조

DAB의 재정이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우호적인 화해에도 이르지 못한 경우 이분쟁을 ICC 3인 중재에회부할 수 있음.

## ✓ FIDIC 제20.7조

당사자가 일정 기간 내에 불만족을 표시하지 않아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발생한 DAB 재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중재에회부할 수 있음. 이 경우제20.4조 [DAB 재정의 획득] 및 제20.5조 [우호적인 화해]는 적용되지 않음.

#### ✓ FIDIC 제20.8조

DAB의 임기만료 또는 기 타 사유로 DAB가 존재하 지 않는 경우에는 제20.4 조 및 제20.5조는 적용되 지 아니하며, 바로 제20.6 조에 의한 중재에 회부할 수 있음.



#### ICC 중재

#### ■ 중재법원, 중재판정부, 사무국 간의 유기적 관계

중재법원은 중재판정부와 중재절차를 관리•감독하는 핵심기구. 사무국의 지원을 받으며 중재합의의 존재여부에 대한 prima facie 판단, 중재인의 선정과 확인, 중재인의 기피의 결정, 일방 당사자가 중재위탁요지서(Terms of Reference) 작성에 불참하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승인, 중재판정문 초안의 검토와 예납금의 결정 등 수행

#### ■ 중재위탁요지서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내려야 하는 쟁점 및 중재판정부의 수권 범위를 명확히 해주는 역할.

증거개시(discovery)의 허용범위, 주장서면의 제출방식, 증인신문의 방식 등 중재절차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절차명령을 작성 교부. IBA 증거조사 규칙.



#### ICC 중재

- ICC 중재법원의 중재판정 초안의 검토(Scrutiny)
- ✓ ICC 중재법원의 행정적인 성격과 감독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 ✓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 서명하기 전에 초안을 중재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중재법원은 판정 문의 형식을 수정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부의 결정의 자유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실체적 쟁 점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중재법원은 초안을 검토할 때, 중재지의 강행법규의 요건을 고려한다.

## ▼ 중재비용

- ✓ 균등 예납 원칙
- ✓ ① 중재인의 보수와 경비 ② ICC 관리비용 ③ 중재판정부가 선정한 전문가의 보수와 경비④ 중재당사자가 지출한 상당한 범위내의 법률비용
- ✓ 비용부담: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맡김. UNCITRAL 중재규칙은 원칙적으로 진 당사자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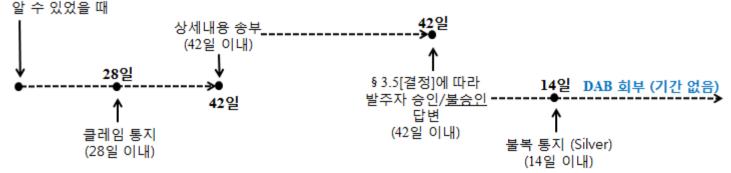
#### 중재지

- 당사자들 자유로이 선택 가능
- 지리적인 관점에서의 편리성 이상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함
- 중재지법이 중재절차에 관여하고, 중재지 법원이 중재판정 취소할 수 있고, 중재 인의 기피에 대한 판단을 함
- 현대적인 중재법(UNCITRAL Model Law) 채택 및 뉴욕협약 가입국 여부 확인
- ICC 중재규칙 지정은 있고, 중재지 지정이 없는 경우 ICC중재법원이 지정
- 중재규칙도 없고, 중재지도 없는 경우 중재조항의 효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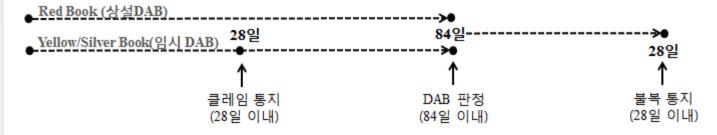


#### 1. 클레임(Cla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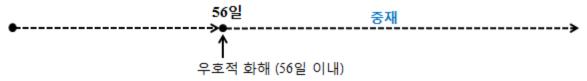
시공자가 해당 사건 또는 상황을 알았거나



#### 2. 분쟁재정위원회(Dispute Adjudication Board: DAB)



#### 3. 우호적 화해(Amicable Settlement) 및 중재(Arbitration)







III 결 론



▶ 엔지니어 제도가 필요한가?

➤ Yellow/Silver Book 임시 DAB → 설계 종료 시점에서 상설 DAB 구성이 바람직

▶ 제20.7조 수정 필요: not final but binding DAB 결정도 바로 중재에 회부가능토록

▶ Not final but binding DAB 결정의 이행을 명하는 Interim Award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사전 고려 필요.

다수당사자 중재에 대한 사전 고려 필요



## 김승현 외국변호사

**T.** 02. 3404. 0253

**F.** 02. 3404. 7306

E. seunghyeon.kim@bkl.co.kr



# 감사합니다